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504-F-3001
건 명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6-1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장항동, 파크프라자 602호)
대표전화 : 031-932-0072 FAX : 031-932-0073

인증서번호 : P250508-D007

심의일자 : 2025-05-08

가 격 심 의 인 증 서

감정서 번호	D42504-F-3001	발 의 처	본사
감정평가액	一金이십팔억일백삼십일만삼천원整 (₩2,801,313,000.-)		
물건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6-1외		
평 가 목 적	공 매		
거 래 처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제 출 처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담당평가사	안승오		

※ 심사사항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사항의 확정
3.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5.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신당동, 남산타운5번상가 3,4층) TEL : 02)514-8811 FAX : 02)514-8812

(토 지)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안 승 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 사 장 박 희 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 이십팔억일백삼십일만삼천원정 (₩2,801,313,000.-)

의 뢰 인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목적	공매(인증서번호:P250508-D007)	
제 출 처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5. 02	2025. 05. 02	2025. 05. 0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7,910	토지	7,910	-	2,801,313,000
			이 하 여 백			
	합 계					₩2,801,313,000

심사확인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申 珉 羽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세종부강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5월 2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5월 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상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원/㎡)
1	부강면 금호리	76-1	2,202	계획관리	휴경지	목장용지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130,100
2	부강면 금호리	76-2	87	계획관리	휴경지	임야	맹지	부정형 완경사	16,300
3	부강면 금호리	76-4	492	계획관리	도로	도로	-	부정형 완경사	36,700
4	부강면 금호리	76-5	974	계획관리	휴경지	목장용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158,000
5	부강면 금호리	76-8	2,115	계획관리	휴경지	목장용지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130,100
6	부강면 금호리	76-9	1,322	계획관리	휴경지	목장용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130,100
7	부강면 금호리	80-4	234	계획관리	도로	도로	-	부정형 완경사	36,700
8	부강면 금호리	산3-8	484	계획관리	법면	임야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24,100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3)~(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일련번호(2),(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2.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2.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토지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토지거래가액(원)[1]	토지단가(원/㎡)
ㄱ	부강면 금호리 199-1	1,323	계획관리	전	2023.01.03	630,000,000	476,000
		-		전	-	630,000,000	
ㄴ	부강면 금호리 524-4	480	계획관리	답	2022.09.01	185,000,000	385,000
		-		답	-	185,000,000	
ㄷ	부강면 부강리 1217	785	계획관리	답	2022.10.10	326,800,000	416,000
		-		답	-	326,800,000	
ㄹ	부강면 금호리 279	1,031	계획관리	자연림	2023.01.20	130,000,000	126,000
		-		임	-	130,000,000	
ㅁ	부강면 노호리 산102-1	2,876	계획관리	자연림	2023.12.04	520,000,000	181,000
		-		임	-	520,000,000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거래가액 = 총거래금액 - 건물추정가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원/㎡)	비고
				지 목				
a	부강면 금호리 616	1,660	계획관리	전 / 전	2024.05.17	경매	316,000	-
b	부강면 문곡리 380	1,864	계획관리	답 / 답	2022.03.29	경매	453,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가격수준(원/㎡)	비 고
근교 농경지대	계획관리	전	세로변	약 400,000 ~ 450,000	본건 유사

4. 경매통계

용도별	세종 시군구전체 2024년 05월 ~ 2025년 04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임야	12,482,787,985	7,708,535,485	61.8	137	22	16.1
전	9,616,189,040	4,601,495,000	47.9	80	18	22.5

[출처: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비교	x	개별요인 비교	x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5.01.01]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도로접면	형상지세	공시지가(원/㎡)
1 ~ 7	A	부강면 금호리	68	764	계획관리	전	답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30,100
8	B	부강면 부강리	산3	793	계획관리	자연림	임	맹지	부정형 완경사	21,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A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3.31 : 0.536 2025.03.01 ~ 2025.03.31 : 0.188
B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2025.01.01 ~ 2025.03.31 : 0.536 2025.03.01 ~ 2025.03.31 : 0.188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 7	A	2025.01.01 ~ 2025.05.02	(1 + 0.00536) x (1 + 0.00188 x 32/31)	1.00731
8	B	2025.01.01 ~ 2025.05.02	(1 + 0.00536) x (1 + 0.00188 x 32/31)	1.0073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라.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전)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 지 조 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접근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A	0.95	1.00	0.97	1.00	1.00	0.922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2	A	0.90	1.00	0.90	0.90	1.00	0.729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행정적조건(지목: 임야)에서 열세합니다.					
3	A	1.00	1.00	0.90	0.33	1.00	0.297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및 행정적조건(지목: 도로)에서 열세합니다.					
4	A	1.00	1.00	0.97	1.00	1.00	0.97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5	A	0.95	1.00	0.93	1.00	1.00	0.884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6	A	1.00	1.00	1.00	1.00	1.00	1.00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상호 대등합니다.					
7	A	1.00	1.00	0.90	0.33	1.00	0.297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및 행정적조건(지목: 도로)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8	B	1.30	0.65	1.00	1.00	0.845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하나 자연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사토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지 목			
평가 사례	a	부강면 금호리 616	1,660	계획관리	전 / 전	2024.05.17	경매	316,000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 지 목	거래일자 /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 토지거래가액(원)	토지단가 (원/㎡)
거래 사례	ㄹ	부강면 금호리 279	1,031 / -	계획관리	자연림 / 임	2023.01.20 / -	130,000,000 / 130,000,000	126,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격차율 검토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비교사례 / 비교표준지	비교사례단가(원/㎡) /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a	316,000	1.02759	1.000	1.313	426,355	3.253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액	A	130,100	1.00731	-	-	131,051	

산출내역							
	시점수정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4.05.17 ~ 2025.05.02)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접근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25	1.00	1.05	1.00	1.00	1.313
		비교표준지는 평가선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우세합니다.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비교사례 / 비교표준지	비교사례단가(원/㎡) / 표준지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원/㎡)	격차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ㄹ	126,000	1.06503	1.000	1.000	134,194	6.083
기준시점 비교표준지가액	B	21,900	1.00731	-	-	22,060	

산출내역							
	시점수정	계획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3.01.20 ~ 2025.05.02)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개별요인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평가선례와 비교 시 상호 대등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결정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 7	A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25
8	B		6.08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적용단가

[적용단가 :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
1	130,100	1.00731	1.000	0.922	3.25	393,000
2	130,100	1.00731	1.000	0.729	3.25	310,000
3	130,100	1.00731	1.000	0.297	3.25	126,000
4	130,100	1.00731	1.000	0.970	3.25	413,000
5	130,100	1.00731	1.000	0.884	3.25	377,000
6	130,100	1.00731	1.000	1.000	3.25	426,000
7	130,100	1.00731	1.000	0.297	3.25	126,000
8	21,900	1.00731	1.000	0.845	6.08	11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393,000	2,202	865,386,000
2	310,000	87	26,970,000
3	126,000	492	61,992,000
4	413,000	974	402,262,000
5	377,000	2,115	797,355,000
6	426,000	1,322	563,172,000
7	126,000	234	29,484,000
8	113,000	484	54,692,000
합계		7,910	2,801,31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거래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거래사례	소재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총거래금액(원) 토지거래가액(원)	토지단가(원/㎡)
1 ~ 7	ㄷ	부강면 부강리 1217	785 / -	계획관리	답 / 답	2022.10.10 / -	326,800,000 / 326,800,000	416,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8	ㅁ	부강면 노호리 산102-1	2,876 / -	계획관리	자연림 / 임	2023.12.04 / -	520,000,000 / 520,000,000	181,000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지가변동률

거래사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ㄷ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2022.10.01 ~ 2022.10.31 : 0.072 2022.11.01 ~ 2022.11.30 : -0.074 2022.12.01 ~ 2022.12.31 : 0.026 2023.01.01 ~ 2023.12.31 : 2.392 2024.01.01 ~ 2024.12.31 : 3.269 2025.01.01 ~ 2025.03.31 : 0.536 2025.03.01 ~ 2025.03.31 : 0.188
ㅁ	세종특별자치시	계획관리지역	2023.12.01 ~ 2023.12.31 : 0.388 2024.01.01 ~ 2024.12.31 : 3.269 2025.01.01 ~ 2025.03.31 : 0.536 2025.03.01 ~ 2025.03.31 : 0.188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 7	ㄷ	2022.10.10 ~ 2025.05.02	(1 + 0.00072 x 22/31) x (1 - 0.00074) x (1 + 0.00026) x (1 + 0.02392) x (1 + 0.03269) x (1 + 0.00536) x (1 + 0.00188 x 32/31)	1.06516
8	ㅁ	2023.12.04 ~ 2025.05.02	(1 + 0.00388 x 28/31) x (1 + 0.03269) x (1 + 0.00536) x (1 + 0.00188 x 32/31)	1.04389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전)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 지 조 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접근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ㄷ	0.95	1.00	0.95	1.00	1.00	0.903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2	ㄷ	0.90	1.00	0.88	0.90	1.00	0.713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행정적조건(지목: 임야)에서 열세합니다.					
3	ㄷ	1.00	1.00	0.88	0.33	1.00	0.290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행정적조건(지목: 도로)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접근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4	ㄷ	1.00	1.00	0.95	1.00	1.00	0.950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5	ㄷ	0.95	1.00	0.91	1.00	1.00	0.865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 및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6	ㄷ	1.00	1.00	0.98	1.00	1.00	0.980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7	ㄷ	1.00	1.00	0.88	0.33	1.00	0.290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경사 등) 및 행정적조건(지목: 도로)에서 열세합니다.					

▌개별요인 비교항목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 근 조 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역과의 접근성,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연 조 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지세, 방위 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	접근	자연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8	ㅁ	1.00	0.60	1.00	1.00	0.600
		대상물건은 사례와 비교 시 자연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적용단가

[적용단가 :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번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원/㎡)
1	416,000	1.000	1.06516	1.000	0.903	400,000
2	416,000	1.000	1.06516	1.000	0.713	316,000
3	416,000	1.000	1.06516	1.000	0.290	129,000
4	416,000	1.000	1.06516	1.000	0.950	421,000
5	416,000	1.000	1.06516	1.000	0.865	383,000
6	416,000	1.000	1.06516	1.000	0.980	434,000
7	416,000	1.000	1.06516	1.000	0.290	129,000
8	181,000	1.000	1.04389	1.000	0.600	11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번호	적용단가(원/㎡)	사정면적(㎡)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400,000	2,202	880,800,000
2	316,000	87	27,492,000
3	129,000	492	63,468,000
4	421,000	974	410,054,000
5	383,000	2,115	810,045,000
6	434,000	1,322	573,748,000
7	129,000	234	30,186,000
8	113,000	484	54,692,000
합계		7,910	2,850,485,000

3. 토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8	2,801,313,000	2,850,485,000

Ⅴ. 감정평가액 결정

1.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2,801,313,000
합 계	2,801,313,000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2,801,313,000
합 계	2,801,313,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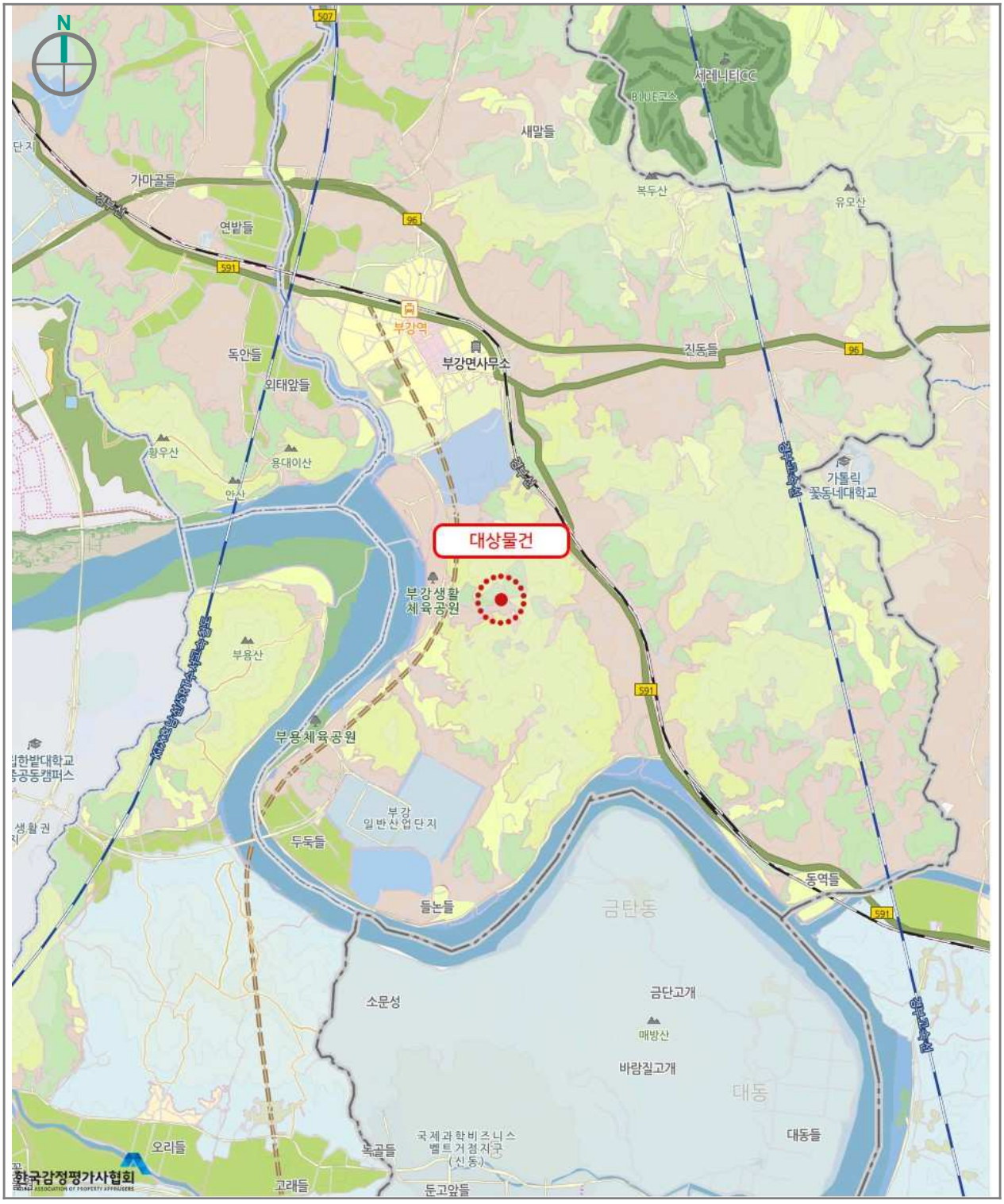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원/㎡)	금 액(원)	
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6-1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2,202	2,202	393,000	865,386,000	
2	〃	76-2	임야	계획관리지역	87	87	310,000	26,970,000	
3	〃	76-4	도로	계획관리지역	492	492	126,000	61,992,000	
4	〃	76-5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974	974	413,000	402,262,000	
5	〃	76-8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2,115	2,115	377,000	797,355,000	
6	〃	76-9	목장용지	계획관리지역	1,322	1,322	426,000	563,172,000	
7	〃	80-4	도로	계획관리지역	234	234	126,000	29,484,000	
8	〃	산3-8	임야	계획관리지역	484	484	113,000	54,692,000	
	합 계							₩2,801,313,000.-	
				이 하	여 백				

(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지리적위치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소재 "세종부강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 주위는 근교 농경지대,마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입니다.
교 통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교통환경은 불편한 편입니다.
접 면 도 로	일련번호(1),(2),(5):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일련번호(3),(7): 현황 도로입니다. 일련번호(4):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6):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8): 본건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합니다.
지세 및 형상	일련번호(1):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사다리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2):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3):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4):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사다리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5):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6):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사다리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7):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일련번호(8):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다소 높은 부정형 완경사지입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1):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4):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5):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6):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7):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8): 법면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일련번호(1),(3)~(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일련번호(2),(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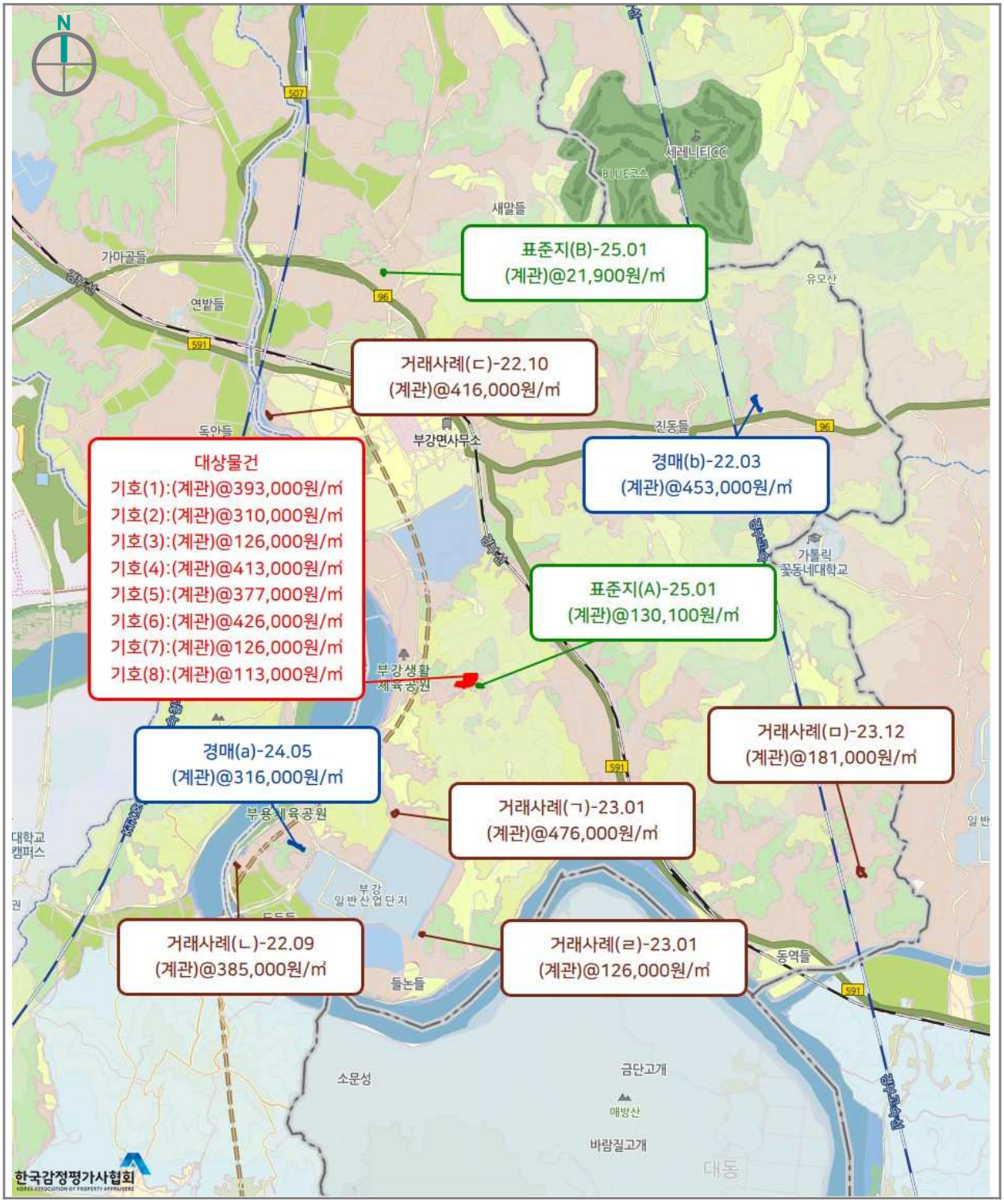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6-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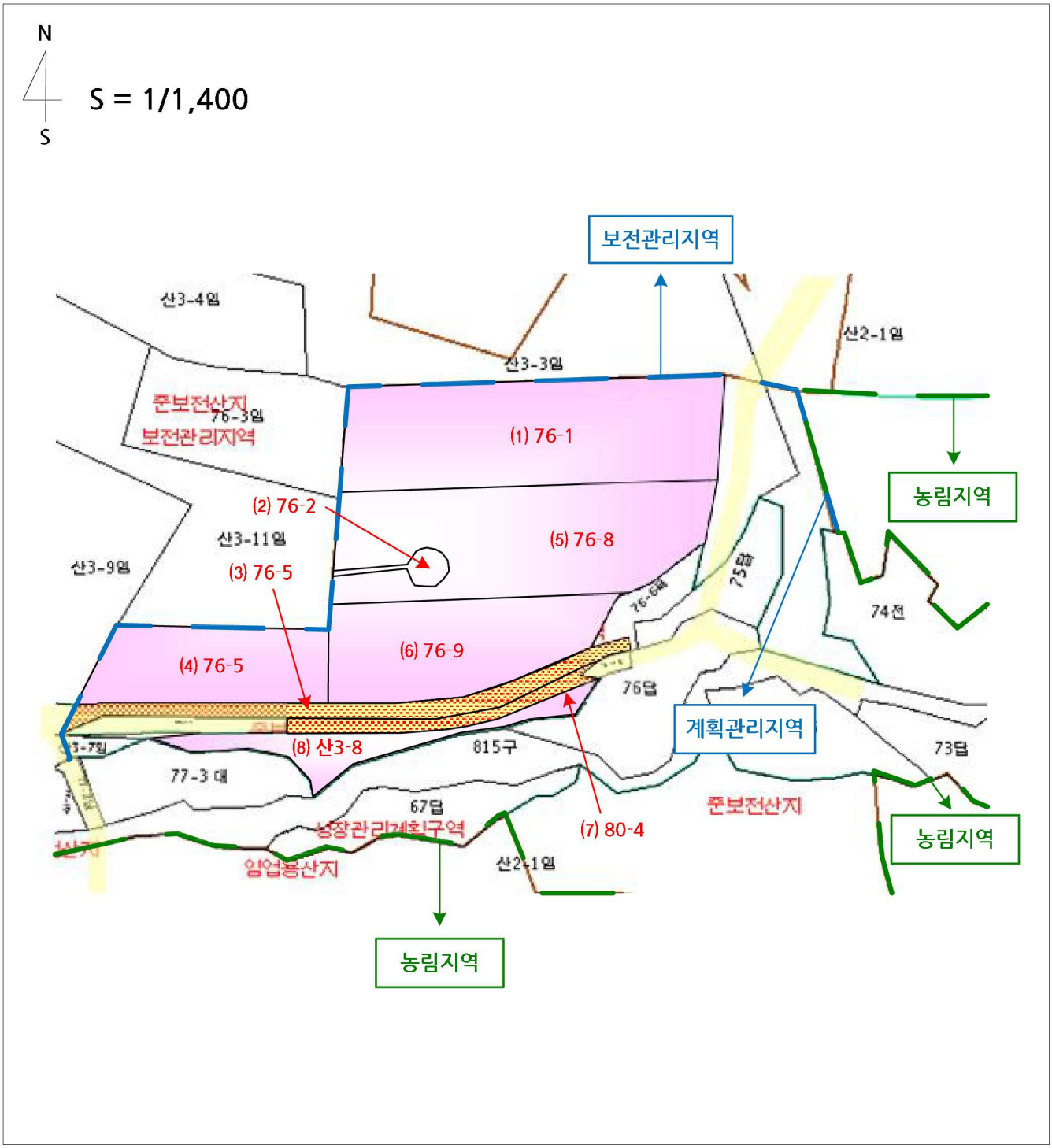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6-1 외



D42504-F-3001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범 례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제시외건물(미등기)
	도로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등기)
			평가건물 3층 이상		

사 진 용 지



본건전경(일련번호(1),(2),(5))



본건전경(일련번호(1),(2),(5))

사 진 용 지



본건전경(일련번호(3),(4),(7))



본건전경(일련번호(6))

사 진 용 지



본건전경(일련번호(8))



주위 전경